제정 2003.01.03
개정 2007.02.07
개정 2012.02.22

정 관

서울특별시자동차대여사업조합

제 1 장 총 칙

제 1 조 【목 적】

본 조합은 자동차대여사업에 관한 국가 시책에 협력하고 국내외의 관광사업 진흥과 외화획득 및 서비스 산업발전의 일익을 담당함과 동시에 조합원 상호간의 공동이익 및 업권보호와 자동차대여사업의 건전한 발전과 공익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 2 조 【명칭 및 성격】

① 조합의 명칭은 서울특별시자동차대여사업조합(이하 “서울조합”이라 한다)라 한다.

② 본 조합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거한 법인으로 한다.

제 3 조 【사무소의 소재지】

본 조합의 사무소는 서울특별시내에 둔다.

제 4 조 【사 업】

본 조합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사업을 수행한다.

1. 자동차대여사업의 건전한 발전과 자동차대여사업자의 공동이익을 도모하는 사업
2. 자동차대여사업에 관한 진흥·발전에 필요한 통계의 작성·관리, 외국자료의 수집과 조사·연구사업
3. 경영자 및 종사원의 교육 훈련

4. 자동차대여사업자의 경영개선을 위한 지도에 관한 사항
5. 자동차대여사업 질서확립을 위한 지도 및 안전관리
6. 국가 또는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위탁받은 업무의 처리
7. 기타 본 조합의 목적 달성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

제 5 조 【선거관리 및 사무관리 규정】

본 조합은 제4조의 사업을 이행하기 위하여 이사회의 의결로 인사, 회계, 직계 및사무분장, 선거관리규정 등 업무처리에 필요한 규정을 제정 및 개정 할 수 있다. 다만, 선거관리규정 개정 시에는 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. [개정 2012.02.22]

제 2 장 회원 및 임원

제 6 조 【회원의 자격 및 구성】

① 본 조합의 조합원은 아래와 같이 일반 조합원(이하 “조합원”이라 한다)과 특별조합원으로 구성한다.

1. 일반조합원: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한 자동차대여사업자로서 주사무소가 서울특별시내 소재한 자동차대 여사업자
2. 특별조합원: 자동차대여사업과 관련된 업무를 하는 사업자 (비영리법인 및 단체를 포함한다)

② 일반조합원의 가입금 및 회비는 총회의 결의에 따라 정하고, 가입절차 등은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정한다.

③ 특별조합원의 가입절차·가입금·회비 등에 대해서는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정한다.

④ 특별조합원이 가입된 경우에는 차기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.

[개정 2012.02. 22]

제 6 조의 2 【조합원탈퇴 등】

① 조합원은 언제든지 조합에서 탈퇴할 수 있다.

② 조합원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자동으로 자격이 상실된다.

1. 조합원의 자격이 없게 된 때
2. 파산한 때
3. 해산한 때

③ 조합원이 탈퇴 및 자격이 상실된 경우에는 가입금은 반환하지 않으며, 채권과 채무는 정산한다.

[신설 2012.02.22]

제 7 조 【회원의 권리】

조합원은 이 정관의 규정과 절차에 따라 다음의 권리를 갖는다.

1. 총회에서의 의결권
2. 총회소집 요구권
3. 본 조합의 제반 서류의 열람 및 공동시설의 이용
4. 기타 본 조합 운영에 관한 건의

제 8 조 【회원의 의무】

조합원은 다음과 같은 의무를 진다.

1. 총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전월 말일을 기준으로 여객자동차운수

사업법에 의해 등록한 대수에 대하여 익월 20일까지 조합비를 납부하여야 한다. 단 조합원사 중 등록대수가 3,000대를 초과하는 경우 초과부분에 대하여는 20%를, 10,000대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 30%를 감면한다. [개정 2007. 2. 7]

2. 특별부과금은 총회의 승인을 득한 경우에 부과할 수 있다.

3. 모든 조합원은 정관과 제반 결의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.

제 9 조 【회원에 대한 제재】

① 조합원은 정관 및 총회 또는 이사회 결의사항을 준수하지 아니하거나 회비를 납부하지 아니하여 본 조합의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였을 때에는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당해 조합원에 대하여 자격정지 또는 제명 할 수 있다.

② 조합비를 체납한 개월 수의 합이 3개월을 초과한 회원은 그 자격이 상실된다.

③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 그 결과를 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.

제 9 조의 2 【특별조합원의 권리와 의무 등】

① 특별조합원은 다음의 권리를 갖는다.

1. 총회 및 행사 참여
2. 본 조합의 제반서류의 열람 및 공동시설의 이용
3. 기타 자동차대여사업 관련 정보 요청
4. 조합원과의 공동사업 수행

② 특별조합원은 다음과 같은 의무를 진다.

1. 이사회에서 결정한 회비납부

2. 업무상 취득한 자동차대여사업 관련 비밀유지

3. 법령 및 사회질서, 풍속에 위반한 일반조합원과의 거래 금지

4. 기타 조합과 조합원의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 금지

③ 특별조합원에게는 선거 및 선출직에 대한 선거권과 피선거권은 부여되지 않으며, 총회에서의 의결권도 부여되지 않는다.

④ 특별조합원은 제2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그 자격이 상실된다.

[신설 2012.02.22]

제 10 조 【 임 원】

본 조합은 다음과 같이 임원을 구성한다.

이 사 장 : 1인

부 이 사 장 : 5인 이내(수석부이사장 1인 포함)

이 사 : 12인 이내

제 11 조 【임원의 선출】

① 임원은 선출이 요구될 시 총회에서 선출하며 다만, 감사로 선임된 자는 이사로 선임할 수 없다.

② 임원의 회사가 조합원의 자격이 상실되면 자동적으로 그 직도 상실된다.

③ 임원 중 자사 사정으로 결원 시 그 직은 후임이 승계한다. 단 이사장은 선출하여야 한다. [개정 2012.02.22]

④ 임원의 선출 또는 선임한 때에는 서울특별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

제 12 조 【임원의 임기】

① 본 조합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.

② 임원의 임기는 선출된 날로부터 기산하되 후임자의 취임 시 까지 그 직무를 수행한다.

③ 보궐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.

제 13 조 【임원의 직무】

① 이사장은 조합을 대표하여 조합업무를 총괄하고 각 회의의 의장이 된다.

② 이사장 유고 시에는 수석부이사장이 그 직무를 이사장 선출 시까지 대행한다.[개정 2007.02. 07]

제 14 조 【감 사】

① 감사는 조합원 중 2인 이내로 구성하고 선출 및 임기는 제11조 및 제12조를 준용한다.

② 감사는 본 조합의 업무 및 재산 상황에 대하여 지도감사 및 회계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.

제 15 조 【임원의 처우】

비상근 임원은 명예직 무보수로 하고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실비지급을 할 수 있다.

제 3 장　회　의

제 16 조　【회의의 종류】

본 조합의 회의는 총회 및 이사회로 구분한다.

제 17 조　【총회의 소집】

① 총회는 조합원으로 구성하고 정기총회는 매년 2월중에 소집한다.

② 임시총회는 다음의 경우에 소집한다.

1.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
2. 이사회의 결의가 있을 때
3. 총회 구성원 5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

③ 총회는 이사장이 소집하며 개회일자와 회의장소 및 부의 사항을 명시하여 늦어도 개회 10일전에 통지하여야 한다, 다만 긴급을 요할 때는 예외로 한다.

제 18 조　【총회의 의결사항】

다음 사항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.

1. 정관의 변경 및 조합의 해산
2. 예산결산 및 사업계획에 관한 사항
3. 조합비 및 특별부과금에 관한 사항
4. 기채 및 상환
5. 임원의 선임 및 해임

6. 재산 사용・수익・처분에 관한 사항
7. 예산의 장관 과목전용에 관한 사항
8. 기타 이사장 또는 이사회가 부의 하는 사항

제 19 조 【이사회의 소집】

① 이사회는 이사장, 부이사장 및 이사로 구성하고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이사 3분의 1이상의 요구에 의하여 이사장이 소집한다.

② 기타 소집에 관한 사항은 제17조제3항을 준용한다.

제 20 조 【이사회의 결의사항】

이사회의 결의사항은 다음과 같다.

1. 총회에 상정할 의안
2. 총회에서 위임된 사항
3. 예산의 항목 간 과목전용 및 예비비 사용에 관한 사항
4. 본 조합 제(諸)규정 제정에 관한 사항
5. 조합원의 자격정지 및 제명에 관한 사항
6. 고문 추대에 관한 사항
7. 기타 조합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

제 21 조 【긴급사항의 처리】

① 총회의 의결을 요하는 긴급한 사항이나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서면결의로써 대체할 수 있다.

② 전항의 경우에는 그 결과를 조합원에 통지하고 차기 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.

제 22 조 【의 결】

① 회의는 구성원 과반수의 참석과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 다만, 정관의 변경 및 본 조합의 해산은 구성원 3분의 2이상 참석과 참석인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.

② 투표결과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재투표하고 재투표 결과 가부동수인 경우 부결한다.

제 23 조 【의 사 록】

① 총회 및 이사회를 개최하였을 때에는 의사록을 작성하고 의장 및 참석인원 2명 이상이 기명날인하여야 한다.

② 전항의 의사록에는 다음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.

1. 개회의 일시 및 장소
2. 회원의 총수 및 참석인원의 성명
3. 부의사항
4. 의결사항 및 찬부의 수
5. 기타 참고사항

제 24 조 【고 문 등】

① 본 조합은 고문을 둘 수 있다.

② 고문은 업계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학식과 덕망을 갖춘 자로 이사회의 추대에 의한다.

제 4 장　자산 및 회계

제 25 조　【자　　산】

본 조합의 자산은 다음 각 호로 조성한다.

1. 본 조합에 속한 토지, 건물, 설비 및 기타물건
2. 조합비 및 특별부과금
3. 조합원의 출자금 및 기부금
4. 본 조합 사업 및 재산에서 발생하는 수익
5. 기타 수익

제 26 조　【사 업 연 도】

본 조합의 사업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를 준용한다.

제 27 조　【예　　산】

본 조합은 매 사업연도의 사업계획에 따라 총수익과 총지출을 예산으로 편성하여 정관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.

제 28 조　【결　　산】

이사장은 매 사업연도의 결산을 완료하고 정기총회 10일전까지 조합의 재산목록, 대차대조표, 수지결산서를 감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제 29 조 【사업보고 및 결산승인】

이사장은 정기총회에 매 사업연도의 사업실적을 보고하여야 하며, 결산에 따른 감사 결과는 감사가 정기총회에 보고하고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.

제 30 조 【특 별 회 계】

이사장은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총회의 결의에 따라 특별회계를 설치할 수 있다.

제 31 조 【서류의 비치】

① 이사장은 정관과 총회의 의사록, 회원명부 및 예산 결산에 관한 서류를 조합사무실에 비치하여야 한다.

② 조합원은 전항의 서류 열람을 요구할 수 있다.

제 32 조 【수익사업】

본 조합은 정관 제1조의 목적을 위하여 총회의 의결로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.

제 5 장　해　산

제 32 조　【해산과 청산】

① 본 조합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58조에 의한 서울특별시장의 명령 또는 총회의 의결로써 해산한다.

② 본 조합의 해산 시 이사장은 청산인이 되어 청산업무를 담당한다.

③ 본 조합이 해산하였을 때에는 잔여재산은 총회의 결의에 따라 처리한다.

부　칙(2003.01.03)

제 1 조　【시행일】

본 정관은 서울특별시장의 승인을 얻은 날부터 시행한다.

제 2 조　【경과조치】

① 제12조 및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초대임원 및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.

② 본 조합설립 전 전국자동차대여사업조합에 가입한 서울지역 업체가 본 조합에 가입하고자 할 경우 가입금은 면제한다.

부 칙(2007.02.07)

제 1 조 【시행일】

본 정관은 개정한 날로부터 시행한다.

제 2 조 【경과조치】

제8조〔회원의 의무〕에 관한 개정규정은 2007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.

부 칙(2012.02.22)

제 1 조 【시행일】

개정된 정관은 서울특별시장이 승인한 날부터 시행한다.